의 안 번 호

1682

[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11. 11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1. 11.(수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1.(화)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,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2021년 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처원)

2020년도 말	2021년도 조성계획			2021년도 말	n)	-
조성액	수 입	지 출	증 감	조성액	ㅂ]	고
29,973	410	-	410	30,383		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
- 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,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,
- 2021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등 관련규정을 준수 하였고, 이자수입 410천원만 증가되는 부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- 제8조의3(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

- 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 - 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 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 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 - 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 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